

(살충제 정의) 「화학제품안전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25호) 제2조(정의)제1호

나. "보건용 살충제"란 개인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류(병원균을 매개하여 사람에게 질병과 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는 해충)의 구제제, 방지제, 유인살충제

라.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란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살충제

※ 「감염병예방법」 제52조(소독업의 신고)에 따라 소독업자로 신고된 자는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제품 사용시 처분 대상임

### □ 긴급 승인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8개)

\* 모두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디노테푸란) 살충제, 소독업자용(일반 소비자용 아님)

연번	승인번호	제품명	제조·수입업체
1	2419-0192 (3419-0020)	에이원유제	(주)국보싸이언스
2	2419-0282 (3419-0012)	프로텍유제	(주)국보싸이언스
3	2419-0196	디페란알파유제	(주)로알파마
4	2422-0003	에스제이프로텍유제	(주)삼정LS
5	2419-0563	에코테푸란유제	(주)에코린
6	2419-0607	십자디노유제	(주)십자성
7	2419-0574	에스테푸란유제	에스팜
8	2419-0576	오송다이노유제	(주)오송